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에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재난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아동·장애인·노인시설, 병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정보시스템 장애 관련 재난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5급 4명, 6급 1명, 7급 4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필수의료지원관 및 필수의료총괄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필수의료 분야 재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2명(5급 1명, 7

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22일까지에서 2027년 2월 22일까지로 연장하고, 교육부와 협업으로 국립대학병원 및 지역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5(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장 밑에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둔다.

②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정책수가 도입 및 운영
2. 지불제도 개편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
3. 상대가치기획단 운영 및 상대가치점수 정기 조정에 관한 사항
4.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진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5. 그밖에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2025년 2월 22일”을 “2027년 2월 22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총계 “836”을 “844”로, 일반직 계 “827”을 “835”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797”을 “805”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17”을 각각 “314”로, 3급 또는 4급 이하 “313”을 “310”으로 한다.

별표 5의2 2)를 삭제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1호 중 “2025년 2월 22일”을 “2027년 2월 22일”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보건복지부 정원 7명(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국립소록도병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의 정원 1명(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6]

보건복지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44조의4제6항 및 제44조의5제4항 관련)

1. 필수의료지원관(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2. 필수의료총괄과(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9
일반직 계	9
4급 이하	9

3.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4급 이하	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4(필수의료지원관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장 밑에 필수의료지원관을 두고, 건강보험정책국에 필수의료총괄과를 둔다. ② ~ ⑦ (생략) <u><신설></u>	제44조의4(필수의료지원관 등) ① ----- ----- ----- 2026년 12월 31일 ----- -----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u>제44조의5(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장 밑에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을 둔다.</u> <u>②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u> <u>③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u>1. 공공정책수가 도입 및 운영</u> <u>2. 지불제도 개편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u>

제45조(한시정원) ① 첨단재생의
 료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업무
 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2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
 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② 국립대학병원 및 지역공공의
 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
 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3. 상대가치기확단 운영 및 상
 대가치점수 정기 조정에 관한
 사항

4.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진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5. 기타 건강보험지불제도 혁신
 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④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6과
 같다.

⑤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한시정원) ① -----

 ----- 2027년 2월
 22일-----
 -----.

<삭 제>

<u>두며, 별표 7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836		844	+8	
일	반	•		•	•		
직		•		•	•		
계			827		835	+8	
		•		•	•		
		•		•	•		
3	급	또는					
4	급	이하	797		805	+8	
		•		•	•		
		•		•	•		

[별표 5]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317</u>	• <u>314</u>	-3
일반직 계	• <u>317</u>	• <u>314</u>	-3
3급 또는 4급 이하	• <u>313</u>	• <u>310</u>	-3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0